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11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제1조(목적)의 인용조문 정비

- 제1조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‘제18조의 3’을 ‘제18조의 7’로 변경

나. 제3조(기금의 용도)의 상위법령 조문의 재기재에 불과한 조항 수정 및 삭제

- ‘제3조제1호~제11호’를 ‘제3조제1호~제3호’로 변경
- ‘제3조제1호~제7호, 제9호~제10호’ 삭제
- ‘제3조제8호, 제11호’는 유지하여 ‘제3조제2호, 제3호’로 올림

다. 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삭제

- 자활기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으로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

라. 제3조 수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정비 : 제6조(지원대상), 제8조(사업자금 대여), 제10조(신용보증)

- 제6조제5호 : ‘제3조제11호’를 ‘제3조제3호’로 변경

- 제8조제1항 : ‘제3조제2호’를 ‘영 제26조의4제4호’로 변경
 - 제10조 : ‘제3조제4호’를 ‘영 제26조의4제7호’로 변경
- 마. 제15조(시행규칙) 삭제 : 상위법령 반복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(자활기금의 적립)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10. 6. ~ 10. 2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4)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2. 11. 3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7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0호 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1호를 제3호로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
2.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

제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제3조제11호”를 “제3조제3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3조제2호”를 “영 제26조의4제4호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3조제4호”를 “영 제26조의4제7호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</u> 2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</u> 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<u>자산형성지원</u> 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<u>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</u> 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<u>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</u> 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18조의7 -----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2. 법 제2조의제2호의 <u>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</u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7조
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
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
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
육성을 위한 비용

<삭 제>
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과
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
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
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
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
<삭 제>

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
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
채무

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
자금 채무

8. 수급자 및 법 제7조제3항에
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
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<삭 제>
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
등을 위한 비용

<삭 제>
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
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
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
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
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
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
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
본인의 보험료 지원

<삭 제>

11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
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
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
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
2023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.
다만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
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
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
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
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) 기금의 지원대상
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
있는 개인·기관·단체 중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자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5. 제3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
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
등을 수행하는 개인·기관·
단체

제8조(사업자금 대여) ① 제3조
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
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
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
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
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.

3. <중전의 제11호에서 이동>

<삭 제>

제6조(지원대상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3조제3호-----

제8조(사업자금 대여) ① 영 제26
조의4제4호-----

-----.

② ~ ④ (생략)

제10조(신용보증) 제3조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신용보증) 영 제26조의4제7호-----

-----.

<삭 제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인용 조항 정비와 기금 존속기한 조항 폐지와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생활보장과 김수진
연 락 처	02-3153-6482